

# 한국콘텐츠진흥원과 공익재단법인 유니재팬(UNIJAPAN)의 업무협력 협약서

한국콘텐츠진흥원(이하 'KOCCA' 라 한다)과 공익재단법인 유니재팬(이하 'UNIJAPAN'라 한다)은 한일 양국의 콘텐츠산업 진흥 및 KOCCA와 UNIJAPAN(이하 '양 기관'이라 한다)의 상호협력관계 강화를 목적으로 다음과 같이 업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협약의 목적은 양 기관이 자국 및 상대국에서 정한 법률을 존중하고 상호 유기적인 업무 협력을 통하여 콘텐츠산업의 제반 분야에서 교류가 활성화되도록 협력체계를 구축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2조(협력분야)** 양 기관은 폭넓은 협력관계를 맺는데 합의하며, 협력범위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양 기관이 발행하는 정기간행물, 각종 조사보고서, 조사연구개발프로젝트, 세미나 등의 콘텐츠관련 자료를 상호 교환한다.
2. 양 기관은 콘텐츠산업 관련 전문인재의 육성 등 교육 분야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 상호 협력하기로 한다.
3. 양 기관이 매년 개최하는 'BCWW'와 'TIFFCOM' 등의 콘텐츠 산업관련 주최 행사에 대해 상호 홍보에 협력한다.
4. 양 기관은 한일 양국의 콘텐츠 공동제작에서 우호적인 환경 정비를 위해 노력한다.

**제3조(비밀유지)** 양 기관은 본 협약과 관련하여 취득한 내용 중 상호 비밀을 유지하기로 한 사항은 본 협약 기간 내 뿐만 아니라 그 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공개 또는 제공하지 아니한다. 다만, 공개가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사전 협의한다.

**제4조(발표 및 유효기간)**

1. 본 협약서는 서명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며, 그 유효기간은 협약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2. 유효기간 만료 3개월 전까지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 당사자에게 협약 해지의사를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경우 1년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한다.

**제5조(기타사항)** 본 협약의 목적 및 취지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추후 결정한다. 또한 양 기관은 본 협약서에서 정한 활동에 최선을 다하기 위해 상호협의 하에 정기적으로 그리고 필요에 따라 합동회의를 갖는다.

본 협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지키고자 국·일문 협약서 각각 2부를 작성하여 서명 날인한 뒤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5월 24일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 홍상표

홍상표

UNIJAPAN

공익재단법인 UNIJAPAN

이사장 사코모토 준이치

道本淳一

# 公益財団法人ユニジャパン (UNI JAPAN) と韓国コンテンツ振興院 (KOCCA) との 業務協力覚書

公益財団法人ユニジャパン（以下、「UNI JAPAN」という）と韓国コンテンツ振興院（以下、「KOCCA」という）は、日韓両国のコンテンツ産業の振興並びにUNI JAPAN及びKOCCA（以下、「両機関」という）の相互協力関係の強化を目的として以下のとおり覚書を締結する。

**第1条（目的）** 本覚書の目的は、両機関が自国及びに相手国に定められた法律を遵守の上、相互の緊密な協力を通じてコンテンツ産業の様々な分野において交流が活性化するよう協力体制を作ることにある。

**第2条（協力分野）** 両機関は、幅広い協力関係を結ぶことに合意し、協力する範囲と内容は以下の通りとする。

- ①両機関が発行する定期刊行物、各種調査報告書、調査研究開発プロジェクト、セミナー等のコンテンツ関連資料を交換する。
- ②両機関はコンテンツ産業関連の専門人材の育成など教育分野において必要な場合、相互協力することとする。
- ③両機関が毎年開催するBCWWとTIFFCOM等のコンテンツ産業関連の主催行事に対して、相互に広報協力を行う。
- ④両機関は日韓両国のコンテンツ共同制作に友好的な環境の整備のために努力する。

**第3条（秘密保持）** 両機関は、本覚書に関連して、ならびに相手方から知り得た機密事項については、本覚書期間中のみならずその期間終了後も、相手方の同意なしに第三者に開示、提供してはならない。ただし、開示が必要な場合には相互に事前協議を行う。

**第4条（発表及び有効期間）**

- ①本覚書は署名した日から効力を生じ、その有効期間は署名日から1年とする。
- ②有効期間は、期間満了3か月前まで両機関の一方の当事者が相手の当事者に文書による解約の意思を示さない限り、1年単位で自動的に延長されるものとする。

**第5条（その他の事項）**

本覚書の目的と趣旨を達成するための細部事項に対しては相互の協議のうえ、決定する。また、両機関は本覚書で定めた活動に対し最善を尽くすために相互協議のもと、定期的にそして必要によって合同会議を開く。

本覚書の内容を誠実に実行すべく日本語・韓国語それぞれ覚書を2部ずつ作成し署名のうえ、1部ずつ保管する。

2013年 5月 24日



韓国コンテンツ振興院

院長 洪相杓

洪相杓

UNI JAPAN

公益財団法人ユニジャパン

理事長 迫本淳一

迫本淳一